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제16592호/19.11.26.개정/20.11.27.시행)됨에 따라 제때 하위법령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발굴 변경허가 신청서를 별지 제5호의2서식으로 신설하고자 함.

한편 현재는 법령에 따른 발굴허가를 득한 이후,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굴에 착수하기 위한 착수통보와 부분완료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행정절차에 대한 국민의 예측 가능성 및 조문 간 법적 정합성 제고를 위해서는 착수와 완료에 대하여도 법령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임.

이에 따라 착수신고서를 별지 제7호의2와 같이 신설하고자 함. 한편 현재 법 제9조제2항,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지표조사에 따른 보존조치로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경우의 결과보고서가 제출되고 있는데, 완료신고와 결과보고의 내용이 상이하지 아니하며 다만 완료신고는 지표조사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의 발굴조사까지 포괄하는 차이가 있다고 할 것임. 따라서 완료신고서 서식을 추가 신설하기보다는 별지 제4호서식을 활용하여 보존조치(발굴조사) 결과보고서 혹은 발굴 완료신고서 중 해당되는 경우를 선택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동 개정을 통한 국민의 추가적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발굴 변경허가 신청서 추가(안 제6조의제2항, 별지 제5호의2서식)
- 나. 발굴조사 완료신고서와 착수신고서 추가 (안 제7조의2, 별지 제4호서식, 제7호의2서식)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라.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전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전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 규칙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령안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발굴허가 신청서 등) ②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매장문화재 발굴변경 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매장문화재 발굴의 착수·완료 신고 등)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매장문화재 발굴 착수신고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매장문화재 발굴 완료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7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문화재 보존조치(발굴조사) 결과보고서
[] 매장문화재 발굴 완료신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허가번호 제 - 호		매장문화재명			
발굴유형 [] 표본 [] 시굴 [] 정밀발굴		발굴 사유			
매장문화재 소재지		매장문화재산포지 면적 m ²		발굴 면적 m ²	
발굴조사 기관명		조사단	조사단장		
발굴기간			책임조사원		
현장조사일 일 원			조 사 원		
발굴 비용 일 원			준조사원		
		보 조 원			
출토유구	종류	시대	수량	중요 유물	비 고
출토유물	종류	시대	수량	중요 유물	비 고
발굴조사 보고서 제출 계획					

위와 같이 발굴을 완료하였기에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제12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제7조의2제2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조치(발굴조사) 결과보고서 또는 매장문화재 발굴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첨부서류	1. 발굴조사 현황(조사개요, 추진경과, 유구(遺構)·유물 현황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 표본·시굴조사 시 후속 조사에 필요한 비용 산출의 근거자료 포함(유적분류, 유구밀도, 층층 여부 등) 2. 출토된 매장문화재 목록 및 사진
------	---

매장문화재 발굴변경 허가 신청서

(양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① 신청인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② 대상 매장 문화재	매장문화재명		
	매장문화재의 종류	발굴(현상변경) 면적 m ²	
	매장문화재 소재지 (발굴 장소)		
③ 신청 사유		④ 건설공사 면적 m ²	
⑤ 발굴 조사 기관	기 관 명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조사단장	책임조사원	
⑥ 허가사항	허가번호		
	발굴면적 m ²	발굴비용	
	발굴기간 착수일부터 일간(* 현장 실조사일수를 말함)		
⑦ 변경사유			
⑧ 변경사항	변경 발굴면적 m ²	변경 발굴비용	
	변경 발굴기간 착수일부터 일간(* 현장 실조사일수를 말함)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발굴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첨부서류	1. 변경 발굴조사 계획서(발굴조사 대상지역의 위치범위·사진자료 및 상세 조사계획, 예산 명세서 등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2. 조사기관 의견서 및 현재까지 조사한 발굴 현황(조사개요, 추진경과 및 사진자료 등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	--

매장문화재 발굴 착수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고인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신고 내용	허가번호		
	매장문화재의 종류		
	발굴(현상변경) 면적		
	발굴기간		
발굴 조사 기관	기관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조사단장	책임조사원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발굴 착수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발굴허가 신청서 등) (생략)	제6조(발굴허가 신청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매장문화재 발굴변경 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제7조의2(매장문화재 발굴의 착수·완료 신고 등)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매장문화재 발굴 착수신고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매장문화재 발굴 완료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